

영등포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2. 9. 1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54호로 2012년 9월 3일 김길자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이
학대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다.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 노인학대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노인 6,745명중 전체 노인의 13.8%(931명)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05년 학대신고는 2,038건 이었으나 2010년에는 3,068건으로 2005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되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위의 조사결과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학대사례 및 대응방안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으로, 노인의 인권증진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계획수립 시 반영 필요

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 : 양천구, 서초구

관 련 법 령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